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단129757(본소), 2019가단132583(반소) 판결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최경창

피고(반소원고) 1. B

피 고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변호사 박선하, 박순덕

변론 종결 2019. 7. 18.

판결 선고 2020. 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52,293,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3,056,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1. 9.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107,644,072원, 피고 C은 39,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69,382,601원, 피고 C은 17,345,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9,355,9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E와 혼인하여 피고 B, 소외 F, 피고 C,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망 E가 사망한 이후 자녀들과 생활하다가 2018. 6.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7. 11. 25. 피고 B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재산 유증에 관해서 아래

내용과 같이 유언을 남기니 B 너는 유언에 따라 집행해 주길 바란다. 내 명의의 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호는 빠른 처분을 위하여 장남인 B 너에게 100% 증여하니, 추후 유증 등기와 매매 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차입금 및세금을 정산하고 난 잔액을 A에게 25%, F에게 10%, C에게 10% 각각 주기 바란다. 단,A이와 F, C이는 상속포기 및 유류분 청구소송 포기 등 상속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다.(중략) 상기 유언을 위하여 유언자 자신이 이 편지 전문을 쓰고 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한다. 작성일자 서기 2017. 11. 25. 유언자 성명D"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없다(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17. 11.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마. 망인은 2018. 4.경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내용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말미에 "유산에 관해서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니 모두들 아무 말 없이 따라주길 바란다. 주택연금에서 일부대출받은 금액은 내 병원비하고 생활비 교회헌금으로 모두 다 사용했으니 그런 줄 알기 바란다. 부디 너희 사남매는 서로 불평 불만하지 말고 성경에도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으니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길 바란다."라고 기재하였다.

바. 망인이 2018. 6. 21. 사망하자 피고 B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아파트에 관하여 2018. 7.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8.10. 매수인 K과 매매대금을 62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K에게 매도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여 2018. 8. 21.과 2018. 8. 22. 양일에 걸쳐 망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노후연금대출금 및 이자 197,423,709원을 전부 변제하였고, 2018. 11.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C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8. 6. 1.부터 2018. 6. 18.까지 6회에 걸쳐36,000,000원을 인출하여 간병비, 재산세 등 명목의 비용으로 합계 17,175,65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간병비 반환 요구를 받고 2018. 7. 9. 원고 계좌로 6,6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 C은 망인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 36,000,000원 중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 합계 23,775,650원을 제외하고

12,224,350원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상속인인 망인의 유지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처분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피고 B를 유언집행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분배할 것이 망인의 유언이다. 피고 B는 이러한 망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628,000,000원에 매도한 후 비용 197,423,709원을 공제한 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107,644,072원 $[(628,000,000\text{원}-197,423,709\text{원})\times 1/4]$ 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07,644,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유류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증과 망인의 사망 전에 피고 C이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약 160,000,000원,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60,000,000원 대여금채권과 15,000,000원 구상금채권 합계 693,826,017원)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 이는 법정 상속분(1/4)의 1/2에 해당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86,728,252원 $(=693,826,017\text{원}\times 1/4\times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공동상속인 중 수인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인 경우 그 증여액에 비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B는 원고의 유류분에 대하여 80% $(=655,000,000/815,000,000\times 10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69,382,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법적 유류분 침해분에 대해서는 이를 원고의 의사와 같이 금전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유류분 청구 부분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 B의 특별수익은 없다. 이 사건 아파트를 통해 받은 대출연금 사용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편지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병원비와 생활비, 교회 헌금 등으로 소진되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편지를 근거로 하여 피고 B를 유언집행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분배하는 것이 망인의 유언이라고 주장하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편지에는 망인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않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편지에 의한 망인의 유언은 유효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편지에 의한 망인의 유언(피고 B를 유언집행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분배하는 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속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상속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망인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망인의 자녀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원고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442,800,641원(=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628,000,000원-노후연금대출금 및 이자 채무액 197,423,709원+피고 C이 보관하고 있는 12,224,350원)이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에 피고 C이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약 160,000,000원의 반환채권,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60,000,000원 대여금채권 및 15,000,000원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유류분액(AXB)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소외 F, 피고 C, 원고 등 4인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원고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인 1/8이며, 원고의 유류분액은 55,350,080원(=442,800,641원×1/8)이다.

3) 원고의 특별수익액(C)

원고의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원고의 특별수익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상속재산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받는 3,056,087원(=피고 C이 보관하고 있는 12,224,350원×1/4)이다.

4) 원고의 순상속분액(D)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등 참조),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있다고 할 것이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자녀들 중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한 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주된 것이고 피고 C이 보관하고 있는 위 12,224,350원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피고 B에게 상속재산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망인의 사망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망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노후연금대출금 및 이자채무 197,423,709원 전부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위 채무를 원고가 분담할 상속채무에 포함시켜 원고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상속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유류분 부족액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52,293,993원이다.

6) 소결

피고 B는 원고에게 52,293,9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9. 7.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C은 피상속인이 건강 악화로 입 · 퇴원을 반복하던 2017. 5.경부터 사망에 이른 2018. 6.경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157,000,000원을 출금하였다. 피고 C은 2019. 5. 1.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C 부부가 2013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40,000,000원의 용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2013년경 벌어진 피고C과 망인 사이의 금전관계가 아니라 망인이 건강악화로 입 · 퇴원을 반복하던 2017. 5.경부터 사망에 이른 2018. 6.경까지 피고 C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해 간 157,000,000원의 용처이다.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망인이 모두 사용했다고 하나, 노령의 환자인 망인이 매달 10,000,000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것 자체를 믿기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파악한 바로는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출금한 사람은 망인이 아니라 피고 C인바, 피고 C이 망인을 핑계로 삼는 것으로 보아 피고 C이 이를 보관 중이거나 아니면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게 위 157,000,000원의 1/4인 39,250,000원(=157,000,000원×1/4)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유류분 상당 금액은 86,728,252원이고, 피고 C은 20%(=160,000,000/815,000,000×1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7,34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통해 받은 대출연금 사용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편지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병원비와 생활비, 교회 헌금 등으로 소진되었고, 그 외 피고 C이 특별수익한 부분은 없으며, 망인 계좌의 예금 출금액 중 장례비등을 지출하고 남은 12,224,350원만을 보관 중에

있다. 피고 C이 보관 중인 12,224,350원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C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특별수익이 0인 상황이므로 피고 C이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 C이 보관 중인 12,224,350원이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고 C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C이 보관 중인 12,224,350원은 피고 C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피고 C 부부가 망인으로부터 G아파트 매입 당시 입금받은 242,000,000원은 G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및 입주 관련 비용으로 전부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상속회복청구는 물론 예비적 유류분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C이 2018. 6. 1.부터 2018. 6. 18.까지 망인의 예금통장에서 36,000,000원을 인출하여 간병비, 재산세 등 명목의 비용으로 지출한 합계 23,775,65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224,35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이 망인의 예금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고 망인의 사후에 간병비 등 명목의 비용을 지출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상속재산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3,056,087원(=12,224,350원×1/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 원고는 피고 C이 망인이 건강 악화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2017. 5.경부터 사망에 이른 2018. 6.경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157,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보관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속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고 C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52,293,993원인 반면 피고 C이 보관 중인 12,224,350원은 피고 C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에 피고 C이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약 160,000,000원의 반환채권,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60,000,000원 대여금채권 및 15,000,000원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1997. 6.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상속채무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노후연금대출금 및 이자 197,423,709원을 2018. 8. 21.과 22.양일에 걸쳐 전액 변제한 사실 및 피고 B가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노후연금대출은 망인의 채무인 점이 명백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위 상속채무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4지분에 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노후대출금 및 이자 49,355,927원 상당은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위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액 상당을 원고에게 구상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노후대출금 및 이자 49,355,927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본소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유류분 부족액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별도의 구상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 B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상속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액 상당을 원고에게 구상할 권리를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49,355,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망인의 이 사건 편지가 2017. 11. 25.경 작성된 지 불과 4일 후인 2017. 11. 29.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하나의 의사에 기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지의 내용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 중 저촉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편지에 "빠른 처분을 위하여 장남인 B(피고 B) 너에게 100% 증여하니"라고 하여 유언공증을 통한 유증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 형식과 절차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유언공증을 해석함에 있어 망인의 이 사건 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망인의 진정한 의사는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차입금(피고 B가 이 사건 반소청구로 구하는 노후연금대출금), 세금을 정산한 후 남은 잔액의 55%는 피고 B에게, 25%는 원고에게, 반소외 F, C에게 각 10%를 분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망인의 유언에 반하는 청구이다.

피고 B는 반소장에서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이를 유증 받았다"라고 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유증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망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처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하는 경우 그 포괄적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하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포괄적 유증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 역시승계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 즉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유증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련된 망인의 모든 채무 역시 피고 B가 단독으로 승계하며, 이처럼 망인의 채무를 단독 승계한 피고 B가 가사 이 사건 아파트에 관련된 노후연금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구상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피고 B에게 상속재산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망인의 사망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망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노후연금대출금 및 이자채무 197,423,709원 전부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무가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